

2023학년도 3월학기 신입학

특별전형 모집요강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 ▶ 새터민



김포대학교
KIMPO UNIVERSITY

- I. 모집단위 및 인원
- II. 전형일정
- III. 지원자격
- IV. 전형방법 및 지원절차
- V. 제출서류
- VI. 장학금 제도
- VII. 합격자 등록 및 환불
- VIII. 기타

[서식]

- ▶ 입학원서
- ▶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I. 모집단위 및 인원

계열	학과	학제	모집여부	재외국민 및 외국인(2호)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7호)	새터민(북한 이탈주민) (6호)
K-Culture 계열	실용음악과(3)	3	○	1	1	1
	글로벌실용무용과	2	○	1	1	1
	유튜브크리에이터과	2	○	1	1	1
	연기과(신설)	2	○	1	1	1
	호텔조리과	2	○	1	1	1
	호텔제과제빵과	2	○	1	1	1
	글로벌호텔서비스과	2	○	1	1	1
	뷰티아트과(헤어전공)	2	○	1	1	1
	뷰티아트과(아트전공)	2	○	1	1	1
	레저스포츠과	2	○	1	1	1
	태권도융합과	2	○	1	1	1
교육·복지 계열	유아교육과(3)	3	-	0	0	0
	아동보육과	2	○	1	1	1
	보건행정과(3)	3	○	1	1	1
	보건복지과(3)	3	○	1	1	1
경영 계열	철도경영과	2	○	1	1	1
	마케팅경영과	2	○	1	1	1
	부동산과	2	○	1	1	1
경찰·경호 계열	경찰행정과	2	-	0	0	0
	무도경호과	2	○	1	1	1
공학 계열	전기차드론과(3)	3	○	1	1	1
	컴퓨터코딩과(3)	3	○	1	1	1
콘텐츠·디자인 계열	게임콘텐츠과	2	○	1	1	1
	시각영상디자인과	2	○	1	1	1
	패션콘텐츠과(신설)	2	○	1	1	1
	공간디자인과(신설)	2	○	1	1	1
합계				24	24	24

※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7호),북한이탈주민(6호)전형은 위의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선발
(단, 모집인원이 없는 학과는 제외)

※ 모집여부의 “-”표시는 모집하지 않음.

II.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 접수 및 지원서류 (전형료 포함) 제출	2022.12.29.(목).~2023.01.12.(목)	교부 :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접수 : 국제교류처(직접,우편)
제출서류 마감 (해당자에 한함)	2023.01.17.(화) 17:00 도착분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로 97 본관 128호 국제교류처 외국인 특별전형 담당자 앞
한국어 능력시험 (K-TOPIK)	2023.01.29.(일)	교부/접수 : 국제교류처
면접	2023.01.20.(금) 14:00	국제교류협력위원회
합격자 발표	2023.02.06.(월) 개별통보	국제교류처
등록금 납부	2023.02.07.(화) ~ 2022.02.09.(목)	국제교류처/ 대학이 지정한 계좌
입학허가서 발급	2022.02.13.(월) ~ 2022.02.17.(금)	국제교류처
비자변경 및 비자발급신청	2022.02.20.(월).~ 2022.02.24.(금)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및 재외공관
개강	2022.03.02.(목)	

- ※ 전형일정은 본교 정책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 국가별 비자발급일정이 상이할 수 있어 전형일정은 경우에 따라 선조치 가능
- ※ 최초 모집기간 종료 후 추가 모집 진행 (상세 일정은 문의 시 별도 안내)

Ⅲ. 지원자격

1. 공통기준 : 국내, 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아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자

2. 전형별 자격

구분	자격요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정원외2%)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내용
	국의 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의 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의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의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국의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국외학교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1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외의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기타의 경우 우리대학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

3. 지원자격 심사 기준

■ 재외국민

가. 학력인정

1) 졸업(예정) 인정 범위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3년 2월 28일까지 졸업해야 함. 단, 해당 국가의 학제 상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

2) 이수학기 인정기준

- 가) 해당국의 관계법령에 의거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 유아원·유치원 등 초등학교 전 단계 과정은 교육과정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나) 초·중·고등학교과정 중의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원 등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미인정.
- 다) 해당 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
- 라) 국내·외 학교의 총 재학기간은 12년(24학기)을 만족해야 함. 단, 학제가 다른 학교로 전·편·신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학교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마)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함.

구분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1학년 ~ 6학년 과정	Year 2 ~ Year 7 과정
중학교 과정	7학년 ~ 9학년 과정	Year 8 ~ Year 10 과정
고등학교 과정	10학년 ~ 12학년 과정	Year 11 ~ Year 13 과정

※ 11학년제 이하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을 경우 12학년 과정 대비 부족한 기간만큼을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해야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인정

3) 외국학교 재학학기 인정

가)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재학기간은 외국학교 교육과정 기간에서 제외함

나) 국내학교와 외국학교 간에 재학학기가 1개 학기 이상 중복된 경우 중복된 학기 중 1개 학기만 외국학교 재학학기로 인정함

4) 조기졸업, 월반, 외국의 학제 차이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 대학교 국제교류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함

나. 지원자격 일반 및 체류, 재학, 재직 기간 산정 기준

1) 학생 및 부모의 근무, 거주 및 체류기간

가)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며, 유학, 교육연수(파견), 안식년,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은 해당하지 않음

나)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학년 이상 수료한 자

다) 국외 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부 또는 모의 근무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기간만 인정함

▶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기간만을 지원자격 산정기간으로 인정함

(1)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2)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3)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라) 국외 체류일수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지원자격 산정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 배우자 및 학생이 함께 국외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국외 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의 출입국사실기록을 근거로 하여 연/월/일 단위로 산출하여 적용함(출국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 입국일은 제외) 소수점 절사

(1)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2)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해외 거주기간’이란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 체류기간’이란 출입국증명서상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 영주기간’이란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 근무기간’이란 증명서상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마) 해외파견 근무자의 범위

- (1)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2)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단,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 (3)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 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란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외국에 상근하는 근무자만 해당하며 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2) 기타

-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교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

■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 해외 1개국 내에서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재학으로 인정하는 학교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 운영되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규학교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 교육과정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IV. 전형방법 및 지원절차

구분	전형방법		
	서류평가	면접평가	계
재외국민	70%	30%	100%(100점)
외국인전형	30%	70%	100%(100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30%	70%	100%(100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30%	70%	100%(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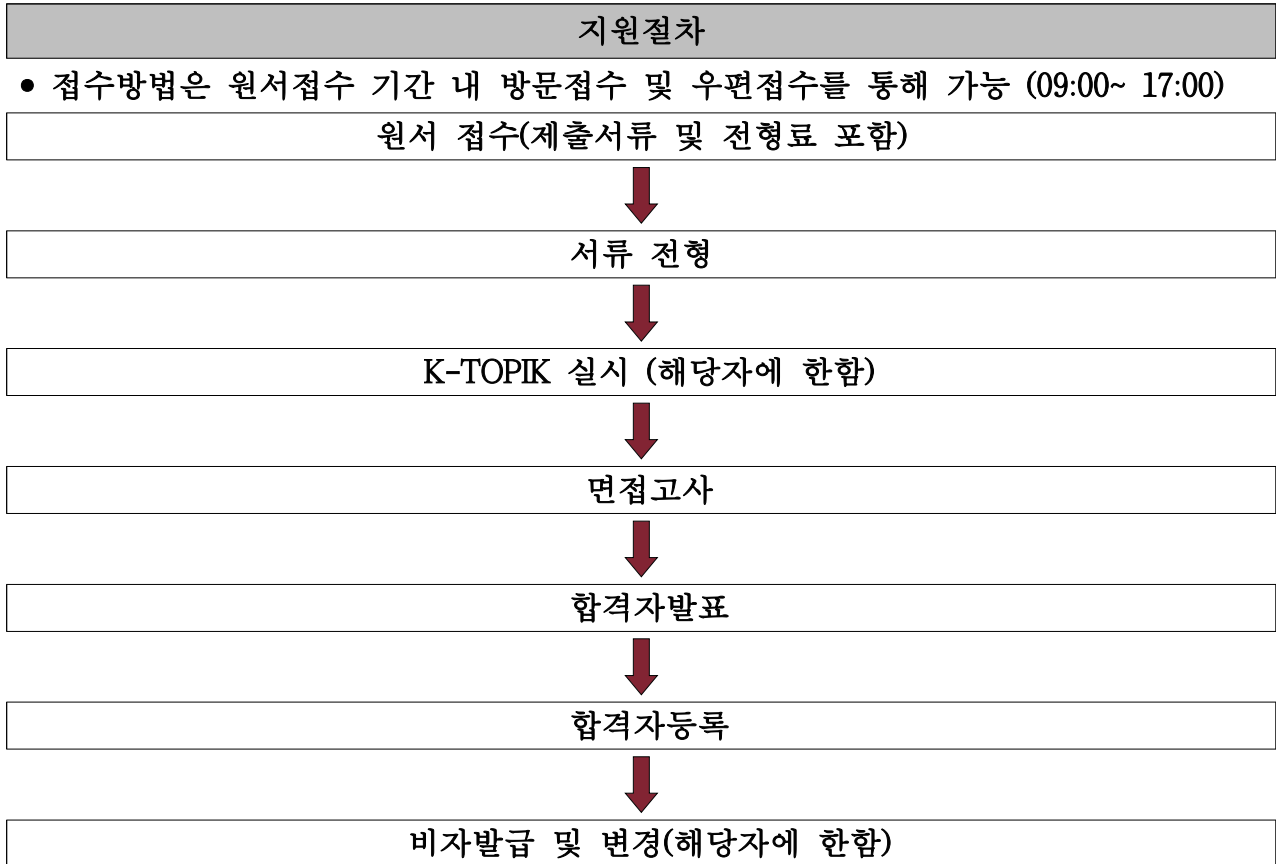
○ 선발기준 및 합격자 결정

- 합격자는 모집단위별 전형요소인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성적을 근거로 총 취득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모집단위별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전원 선발합니다. (단,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총모집정원의 2%이내에서만 선발합니다.)
 - ※ 서류심사 결과 본교 수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서류 평가 항목인 어학요건 중 본교 시행 필기고사(K-TOPIK 한국어능력시험)를 응시해야 하는 지원자는 서류지원 시 별도로 K-TOPIK 시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자에 한함)**
- 동점자 발생 시 재외국민전형은 서류평가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외국인전형일 경우 면접평가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이외의 경우, 전원 합격처리 합니다.
- 사증발급 불허 시 입학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본교 환불규정에 따라 반환됩니다. (전형료 제외)
 - ※ 외화송금일 경우, 수수료 본인 부담
- 서류 미제출, 허위 기재, 위조, 변조, 대리시험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입학 전, 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자는 2개 이상의 모집단위에 복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원서 접수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원서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출 전에 입력 내용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 접수 시 지원자의 연락처 및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연락처 오기 및 누락 또는 변경된 연락처를 국제교류처로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82-31-999-4258, 4714 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교에서는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를 통해 원서를 접수하며, 지원자의 동의하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입학 및 학적 관련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본교 입학 이후부터의 개인정보는 교육, 행정, 연구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지원자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전형구분, 지원학과, 수험번호, 출신학교, 국적,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 전형료

- 금액 : 50,000원
- 납부방법 : 접수 시 현금 납부 및 대학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
- 전형료 반환 관련(고등교육법시행령 제 42조의3)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전형료를 반환합니다.
 - ※ 고등교육법 제 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은 입학전형료 납부자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 ※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단,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전형료 결제 후에는 원서내용의 수정, 접수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전형료 결제 전에 작성한 원서를 주의 깊게 읽고 틀린 부분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만,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및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형료 환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원서접수 수수료 공제)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V. 제출서류

※ 본교 입학원서,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은 모든 지원자 공통사항

지원구분	공통 제출서류
해외파견 근무자의 자녀	①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② 초·중·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④ 출입국 사실증명서(부모, 학생)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⑤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⑥ 여권 사본(부모, 학생) ⑦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기타 재외국민	⑧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 ⑨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 ⑩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 ⑪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

※ 단, 아래 해당 지원자는 상기 서류와 함께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포의 자녀	①~⑪은 상기 서류와 같음 ⑫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⑬ 영주권 사본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①~⑪은 상기 서류와 같음 ⑫ 국적상실확인증명서(주민등록말소등본 등) ⑬ 외국국적증명서(학생 :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⑭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⑮ 상기 이외는 순수외국인 모집요강에서 정하는 제출서류 적용

지원구분	제출서류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①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② 초·중·고 성적증명서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④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⑤ 신분증 사본
새터민(북한이탈주민)	① 입학원서(본교 국제교류처에서 수령 후 한글 자필작성) ② 새터민 확인서류(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청 발행)) ③ 학력입증서류 - 북한이탈주민학력인정증명서(시·도 교육청) - 북한이탈주민등록인정확인서(시·군·구청 발행) - 교육대상자 확인서(시·군·구청 발행) ※ 해당 자격요건을 갖췄을 경우, 대학에서 최종 입학 후 50% 장학금 지급 및 “남북하나재단” 에서 등록금의 50% 지원 (추후 자격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지원불가 할 수 있음)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모든 전형 대상자 해당)

- 지원자는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를 반드시 서류제출 기한 내에 국제교류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또는 직접제출)
- 중국 이외의 국가 출신 지원자의 경우 해당 서류[재학, 성적, 졸업(예정)증명서 등]는 해당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한국의 경우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사본제출로 명시된 서류는 제외)
-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본교의 추가서류 요구 시 통보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허위, 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입학 전, 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구분	지원서류 제출처
제출기간	2022.12.39.(목). ~ 2023.01.17.(수) 09:00 ~ 17:00
제출방법	등기우편(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제출
주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로 97 김포대학교 본관 128호 국제교류처 외국인 입학담당자 앞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Room No. 128, Main Building, Kimpo University, 97 Gimpodaehak-ro, Wolgot-myeon, Gimpo-si, Gyeonggi-do, 10020, Republic of Korea.

※ 제출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한 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추가 모집 진행 대상자는 별도 안내 (상세 사항은 문의 시 별도 안내)

Ⅵ. 장학금제도

○ 어학우수 장학금

장학금 지급 대상	장학금 지급액
TOPIK 4급 취득자	등록금의 30%
TOPIK 5급 취득자	등록금의 40%
TOPIK 6급 취득자	등록금의 70%

- ※ 입학 첫 학기에만 해당하며, 어학성적이 우수한 해당 급수 취득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 ※ 입학금은 제외하고 등록금에서 취득 급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장학금을 지급
- ※ 본교 한국어학원 출신 학생은 입학성적과 관계없이 등록금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
- ※ 첫 학기 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
- ※ 본교와의 교류협정에 따른 외국학교 출신 입학자의 장학금은 교류협정 체결내용에 따라 지급
- ※ 본 장학금은 외국인에 한함.

○ 재학생 성적 장학금

장학금 지급 대상	장학금 지급액
평점 3.0이상 3.5 미만	등록금의 30%
평점 3.5이상	등록금의 40%

- ※ 상기 장학기준 이외의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에 따릅니다. 단, 장학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은 본교 장학제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VII. 합격자 등록 및 환불

합격자 발표 및 등록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합격자 등록방법 절차	내용
등록금 고지서 수령	김포대학교 국제교류처에서 개별안내
등록금 납부	등록기간 내 김포대학교 국제교류처에서 개별안내
등록확인 방법	김포대학교 국제교류처로 문의 (031-999-4714, 4258)

※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등록금 환불

- 본 대학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및 비자신청이 거절된 경우 본교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처리(전형료 제외)

외국인 숙소

※ 신입생은 첫 학기에 본교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숙소 입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숙소 구분	수용인원	숙소비(월)
정보관 게스트하우스	4인실 ~ 12인실	150,000원

※ 외국인 숙소와 관련한 사항은 국제교류처로 문의 하시기 바라니다.

(국제교류처 국제교류지원팀 : +82-31-999-4714, 4258)

※ 외국인 숙소는 최종 등록인원수에 따라 입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숙소 비용은 본교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숙소는 투 룸(4인 + 4인)으로 8인실이며, 추후 사용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 합격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체류자격 변경 허가자는 즉시)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시 필요 서류

- 여권(원본), 복사본1부
- 여권용 사진 1매 규격 (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본
- 통합신청서(국제교류처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
- 재학증명서(본교발행)
- 학비 납입 증명서
- 숙소 제공 확인서
- 수수료 13만원 (비자변경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비용)
- 건강진단서(해당자만)

체류지 변경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옮겼을 경우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시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국제교류처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
- 여권(원본), 복사본 1부
- 외국인 등록증(원본), 복사본 1부
- 거주증명서 혹은 부동산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국제교류처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



2023학년도 외국인 특별전형

김포대학교 입학원서

수험번호는 대학에서 부여함

수 험 번호	
--------------	--

지원자사항	성명	(한글)	(영문)
	구분	국적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한국어 능력	<input type="checkbox"/> TOPIK 자격증 보유 ____ 급	
<input type="checkbox"/> _____ 한국어학원 _____ 급 수료			
<input type="checkbox"/> K-TOPIK 응시 신청 (TOPIK 자격증 미보유, 한국어학연수 경험 없음)			

지원	지원학과	전형구분	<input type="checkbox"/> 순수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새터민 <input type="checkbox"/> 전과정해외이수자
----	------	------	--

수학기 간	국가	재학기간	학교명	인정 여부
		년 월 일 - 년 월 일	초등학교 졸업·예정·재학	
		년 월 일 - 년 월 일	중학교 졸업·예정·재학	
		년 월 일 - 년 월 일	고등학교 졸업·예정·재학	
		년 월 일 - 년 월 일	대학교 졸업·예정·재학	

보호자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국적		지원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지원자연락처	지원자	전화 :	휴대전화 :	E-mail :
	주소	본국		
한국				

위 본인은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며 지원자의 개인 정보(온라인, 오프라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전형료 50,000원
김포대학교 총장 귀하		

